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 10. 18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0.9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.10.16.
- 다. 상정일자 : 제17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2.10.18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구 본 수 교육지원과장

가. 제안이유

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목적(안 제1조)

-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

2) 기능(안 제2조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고 자문에 응함
 - 교육발전 방향, 정책제안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 -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
 -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·유치에 관한 사항
 -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
 -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·관·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
 -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

3) 위원회 구성(안 제3조)

- 위원장(구청장)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-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,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
-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
 -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, 지역내 교육전문가
 -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
 - 각 학교급별(유치원, 초·중·고교) 교장(원장), 학교운영위원장, 학부모 대표
 - 그 밖에 교육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, 주민 대표 등

4) 회의 등(안 제7조)

-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-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

5) 의견의 청취(안 제9조)

-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위원회는 전문기관,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공청화·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0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- 0 주요내용을 보면, 위원회는 교육발전 방향, 정책제안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, 조정하고 자문에 응하게 되며, 위원은 부구청장,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, 지역내 교육전문가와 각 학교급별 교장 및 원장, 학교운영위원장, 학부모 대표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,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0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및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으며,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